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67호 2022. 3. 7.(월요일)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2-2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 3
- 하동군 고시 제2022-26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 4
- 하동군 고시 제2022-27호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5
- 하동군 고시 제2022-29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7
- 하동군 고시 제2022-31호 공유수면 점용 변경 허가고시(배종\*)..... 8
- 하동군 고시 제2022-3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박미\*)..... 9
- 하동군 고시 제2022-38호 하동군 동광마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정정).....10
- 하동군 고시 제2022-4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9
- 하동군 고시 제2022-3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21

## 입법예고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공고 제2022-2호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자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2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공고 제2022-3호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9

##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2-289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38
- 하동군 공고 제2022-295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긴급)(천연잔디구장 관리용 장비 구입).....39
- 하동군 공고 제2022-325호 소하천 점사용 허가공고.....42
- 하동군 공고 제2022-356호 공인 등록 및 폐기공고.....43

회									
람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2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2. 14.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2-9호
2. 허가연월일 : 2022. 2. 14.
3. 점·사용의 목적 : 김양분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횡배수관암거 설치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1139번지, 162㎡
5. 점·사용의 기간 : 영구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수

하동군 고시 제2022 - 26호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5일

하 동 군 수

###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내용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관리자	해제사유	비고
		유역면적(ha)	유효저수량(천m <sup>3</sup> )	제당높이(m)			
대방골	경남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763-1	24.0	12.54	0.6	하동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마량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232-1	65.0	2.94	3.0	하동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2. 저수지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건설교통과 농업기반 055-880-2512~5)

하동군 고시 제2022 - 27호

##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5.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134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6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광진터길 46-12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2.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13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137	20220215		20090302	공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384-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458-22	20220215		20090702	예전의 고속도로 기념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81-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019	20220215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8-5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78	20220215		2007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라 불리워졌기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1069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공설운동장로 471	20220215		20070618	공설운동장 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111-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대촌길 44-12	20220215		20070618	대촌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111-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대촌길 44-8	20220215		20070618	대촌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111-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대촌길 44-10	20220215		20070618	대촌이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606-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성평길 44-7	20220215		20070618	성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30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409-77	20220215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수곡면) 활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356-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길 20	20220215		20080402	회신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26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강선길 79-3	20220215		20070618	강선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13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동서길 32-25	20220215		20080402	마을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라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2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778	20220215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76-2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정안로 159	20220215		20070618	도로구간 인근에 위치한 정안봉이라는 산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759-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점길 18-66	20220215		20070618	동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광진터길 46-1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광진터길 46-10	20220215		20080402	광진터라는 지명이름 반영	
건물번호분할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광진터길 46-1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광진터길 46-12	20110729		20080402	광진터라는 지명이름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22-29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2. 16.

하 동 군 수

기준점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표고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 재질	비 고
명칭	번호	위도	경도		X	Y					
지적도근점	W6236	34-59-31.97034	127-52-14.48405	중부	266577.490	279492.280	825.273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100-2	2021.1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6237	34-59-32.55042	127-52-16.78881	중부	266595.870	279550.580	818.62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산88-1	2021.1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6238	34-59-31.18215	127-52-17.67833	중부	266553.900	279573.510	797.638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100-3	2021.1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6239	34-59-29.95512	127-52-15.47025	중부	266515.600	279517.840	802.42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100-3	2021.1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6240	34-59-30.01557	127-52-13.73353	중부	266517.080	279473.770	799.94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산100-3	2021.1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6241	34-58-54.87622	127-53-44.06736	중부	265454.400	281774.480	84.16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763	2021.1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6242	34-58-51.90111	127-53-45.73867	중부	265363.090	281817.690	70.493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858	2021.1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지적도근점	W6243	34-58-47.55943	127-53-42.12585	중부	265228.470	281727.250	60.44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629-2	2021.12.07	철재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 - 3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02. 22.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19-43호
2. 허가연월일 : 2019. 8. 25.
3. 점·사용의 목적 :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76번지 단독주택건립에 따른 진입로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1319(인접:옥종면 궁항리 76-1)(3㎡)
6. 점·사용의 기간 : 2019. 08. 25. ~ 2024. 08. 25.
7.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 배종\*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3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2. 24.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2-12호
2. 허가연월일 : 2022. 2. 24.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및 경작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809번지(인접지번: 미점리 337-1번지) , 350㎡
5. 점·사용의 기간 : 영구가스022.02.24 ~ 2026.02.23.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총장로 \*\*, 박미\*



하동군 고시 제2022 - 38호

# 하동군 동광마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정정)

하동군 고시 제2021-8호(2021.01.11.)로 고시된 하동군 동광마을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일부 오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하 동 군 수

##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개요 및 범위	사업명	사업유형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다시 피는 삶의 터전, 동광(東光)마을	주거지원형	257.76	2021~2024
	사업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97-8번지 일원	사업면적	100,000.0㎡
사업시행자 및 참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동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li> </ul>			
사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여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 SOC공급과 역사문화 지원을 활용하여 지역활력 유도</li> </ul>			
사업내용 및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환경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li> <li>마중물(4개사업), 부처연계(1개사업), 공기업(1개사업)</li> </ul>			상세 ③ 참조
재원조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중물 133.34억, 부처 80억, <b>공기업 33.52억, 기금 10억, 민간 0.9억</b></li> </ul>			상세 ⑤ 참조
국가지원항목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중물 사업비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li> </ul>			상세 ⑥ 참조

## 활성화계획도



※ 위 활성화계획도는 참고용으로 사업추진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② 계획의 목표

비전	“다시 피는 삶의 터전, 동광마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치된 주거 정비로 지역활력 형성</li> <li>하동읍 지역자원의 융합을 통한 정주환경 재생</li> <li>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공간 창출</li> </ul>



성과 지표



- 1 주거환경 정비 및 공유이용시설 확충
- 2 주민참여 조망경관과 자원특산물을 활용한 공동체사업
- 3 주거지 프로그램 특화 및 공동체 활성화

③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가.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구분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합계			257.76			
마중물 사업	소계		기존	정정		
	단위사업	세부사업	143.34	133.34		
	공동주거 플랫폼 조성	동광 공동채 조성	51.67	41.69	H/W	동광 임대주택 조성
					H/W	동광 공영주차장 조성
					H/W	동광 공동채 활력센터(어울림센터)
					S/W	동광 가치살이 프로그램 운영
		동광 나눔채 조성	22.00	22.02	H/W	순환형 공유주택 조성
					H/W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S/W	나눔채 더불어살기 프로그램
					S/W	동광 가치살이 집수리단
	일상생활 기반시설 확충	마을숨길 띄우기	14.93	14.93	H/W	마을 1-2구간(자투리슈터)
					H/W	산복1길 안전웬스 조성
					H/W	기존 도로 잔여지 녹지 조성
		동광마루조성	20.81	20.81	S/W	동광마을 마을지킴단
					H/W	친환경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H/W	동광숲마루 조성사업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10.93	10.93	S/W	마루아름(플리마켓)프로그램	
				H/W	골목환경정비 및 셉테드 사업	
H/W				노인안전보행길 조성		
마을역사 장소매력 증진	우리마을 시인의 공간	15.18	15.18	S/W	우리동네골목길 가꾸기	
				H/W	주민과 시인의 마을 아카이브 센터	
마을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7.78	7.78	S/W	마을시인학교	
				S/W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	
소계			80.00			
부처 연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80.00	· 테마와 경쟁력 있는 농촌발전 거점육성		
				· 지역간 소통을 위한 시설조성 및 거버넌스 구축		
소계			33.52			
공기업 사업	공공임대주택 조성		33.52	· 공공임대주택 30호 공급		
소계			10			
*기금	공공임대주택 조성		10	· 동광활력센터 조성 지원		
소계			0.9			
**민간 투자	노후주택 집수리 자부담		0.9	· 노후주택 집수리지원		

[정정내용]

※ 세부사업비 단순 오기에 따라, 총 사업비(257.76억원) 및 마중물 사업비(133.34억원)는 변경 없음

1. 동광 공동채 조성 마중물 사업비 오기(51.67억원(HUG기금 10억원 포함) → 41.69억원)  
\*마중물 사업비 내 포함되었던 HUG 기금 10억원은 별도 표기
2. 동광 나눔채 조성 마중물 사업비 오기(22.00억원 → 22.02억원)  
\*\*당초 고시공고 상 '노후주택 집수리 자부담'이 미표기되어 있어 추가 표기

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

구분	현황	공급 및 확충 계획	현황 대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0호 (0세대/355세대)	30호	8.40% (30세대/350세대)
공영주차장 공급	0면	70면	-
빈집 정비	11호	3호	28.00%
불량도로 정비	1,817m	1,817m (마을길개설+펜스설치+골목 정비)	100.00%
지역공동체 발굴 (신규) 건수	2건	5건	250.00%
노후주택 집수리	-	90호	-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기준]

(단위: 억원, m<sup>2</sup>)

기반시설종류	단위사업명	사업비	위치	면적(규모)	사업내용	비고
공동이용시설	동광공동체조성	85.2	읍내리 395번지 외 8필지	임대주택 30호	임대주택, 활력센터	
	동광나눔체조성	22.0	읍내리 369번지 외 2필지	53m <sup>2</sup> , 노후주택90호	순환형 공유주택	
도로	일상생활	14.93	읍내리 450-5 외 1필지	L=84m, A=257.9m <sup>2</sup>	도로환경 개선	
주차장,공원 골목길	기반시설	20.11	읍내리 1220번지 외 6필지	A=606m <sup>2</sup> , A=1,798m <sup>2</sup>	마을주차장 및 녹지 조성	
	확충사업	10.92		A=815m <sup>2</sup> , A=2,000m <sup>2</sup>	쌈지문화마당 조성	

[정정]

(단위: 억원, m<sup>2</sup>)

기반시설종류	단위사업명	사업비	위치	면적(규모)	사업내용	비고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동광공동체 조성	35.29	읍내리 395 외 8번지	공동이용시설 A=580m <sup>2</sup> (마을회관, 어울림센터 등) 공영주차장 A=300m <sup>2</sup>	동광임대주택 및 생활SOC 조성	임대주택 30호 / 공기업 참여
도로, 녹지	마을 숨길 튀우기	12.51	읍내리 450-5 외 1필지	도로개설 A=512.37m <sup>2</sup> , 녹지공간 A=112m <sup>2</sup>	도로환경 개선	
주차장, 녹지	동광마루 조성	20.31	읍내리 1220 외 6필지	주차장 A=606m <sup>2</sup> 동광숲마루 A=1,064 m <sup>2</sup>	마을 주차장 및 녹지 조성	
공동이용시설 주차장	우리마을 시인의 공간	14.67	읍내리 1230-1 외 1필지	아카이브 센터 A=544 m <sup>2</sup>	아카이브 센터 조성	

\*녹지공간 : 기존도로 잔여지 녹지 조성 사업

[정정내용]

- 사업비는 해당시설 조성 사업비만 기재(SW 사업비 등 제외 / 동광공동체 조성 사업 : HUG기금 10억원 포함)
- 도시재생기반시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시설로 임대주택 및 순환형 공유주택 등 제외 및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중 도시재생기반시설 해당 내용 기입
  - 동광공동체 조성 : 임대주택 30호 제외 → 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정정
  - 동광나눔체 조성 : 순환형 공유주택 조성사업으로 제외
- 마을 숨길 튀우기 사업 중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규모 대신 사업면적으로 기입(L=84m → A=512.37m<sup>2</sup>), 녹지공간(기존도로 잔여지 녹지 조성 사업) 면적 오기(257.9m<sup>2</sup> → 242.00m<sup>2</sup>)
- 동광마루 조성 내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 규모 오기(606m<sup>2</sup> → 300m<sup>2</sup>) 및 동광숲마루 편입 토지였던 하동읍 읍내리 382-9번지(734m<sup>2</sup>) 오기에 따른 면적 감소(1,798m<sup>2</sup> → 1,064m<sup>2</sup>(-734m<sup>2</sup>))
- 당초 쌈지문화마당 조성 오기 및 미기입된 우리마을시인의 공간 사업 기입

5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기존]

구 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	마중물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사업기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합계			257.76	80.00	53.34	56.00	24.00	-	33.52	10.00	0.90	
A~D 마 중 물 사 업	합 계		143.34	80.00	53.34	-	-	-	-	10.00	0.90	`21~24
	A 공동주거플랫폼 구성사업	공동채	51.67	25.00	16.67	-	-	-	-	10.00	-	
		나눔채	22.00	13.20	8.80	-	-	-	-	-	0.90	
	B 일상생활 기반시설	마을숨길	14.93	8.96	5.97	-	-	-	-	-	-	
		동광마루	20.81	12.49	8.32	-	-	-	-	-	-	
		확충사업	10.93	6.56	4.37	-	-	-	-	-	-	
		안전골목길										
C 마을역사 장소 매력 증진사업	시인공간	15.18	9.11	6.07	-	-	-	-	-	-		
D 마을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		7.78	4.67	3.11	-	-	-	-	-	-		
E 부처 연계 사업	합 계		80.00	-	-	56.00	24.00	-	-	-	-	`16~20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림부)		80.00	-	-	56.00	24.00	-	-	-	-	
F 공기업	합 계		33.52	-	-	-	-	-	33.52	-	-	`21~22
	경남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조성		33.52	-	-	-	-	-	33.52	-	-	

[정정]

구 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	마중물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사업기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합계			257.76	80.00	53.34	56.00	24.00	-	33.52	10.00	0.90	
A~D 마 중 물 사 업	합 계		133.34	80.00	53.34	-	-	-	-	10.00	0.90	`21~24
	A 공동주거플랫폼 구성사업	공동채	41.69	25.01	16.68	-	-	-	-	-	-	
		나눔채	22.02	13.21	8.81	-	-	-	-	-	-	
	B 일상생활 기반시설	마을숨길	14.93	9.96	4.97	-	-	-	-	-	-	
		동광마루	20.81	13.49	7.32	-	-	-	-	-	-	
		확충사업	10.93	7.24	3.69	-	-	-	-	-	-	
		안전골목길										
C 마을역사 장소 매력 증진사업	시인공간	15.18	9.11	6.07	-	-	-	-	-	-		
D 마을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		7.78	1.98	5.80	-	-	-	-	-	-		
E 부처 연계 사업	합 계		80.00	-	-	56.00	24.00	-	-	-	-	`16~20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농림부)		80.00	-	-	56.00	24.00	-	-	-	-	
F 공기업	합 계		33.52	-	-	-	-	-	33.52	-	-	`21~22
	경남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조성		33.52	-	-	-	-	-	33.52	-	-	
*G 기금	합 계		10.00	-	-	-	-	-	-	10.00	-	`21~22
	동광활력센터 조성 지원		10.00	-	-	-	-	-	-	10.00	-	
**H 민간	합 계		0.9	-	-	-	-	-	-	-	0.9	`21~22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0.9	-	-	-	-	-	-	-	0.9	

[정정내용]

1. 마중물사업 합계 오기(143.34억원 → 133.34억원)
2. 동광공동채 조성 사업비 오기(51.67억원(HUG기금 10억원 포함) → 41.69억원(HUG기금 10억원 \*G 기금)으로 별도 표기)
3. 동광나눔채 조성 사업비 오기(22.00억원 → 22.02억원)
4. 세부사업 국비 및 지방비 오기에 따른 수정
5. HUG기금(\*G 기금) 및 집수리사업 자부담(\*\*H 민간) 별도 표기

⑥ 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기 투입	2021년	2022년 이후	계
마중물 사업	-	17.40	62.60	80.00
국비	-	11.60	41.74	53.34
지방비	-	-	-	-
부처연계	80.0	-	-	80.00
공기업	-	5.36	28.16	33.52
기금	-	-	10	10
민간	-	-	0.9	0.9
사업비 합계	80.0	34.36	143.4	257.76

[정정내용]

- HUG기금 및 집수리사업 자부담 별도 표기

⑦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 평가 및 환류계획의 기본방향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체계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



□ 목표지표 설정 및 평가계획(※평가계획 성과평가 프로세스 참조)

목표지표 설정		주요 지표
공동주거 플랫폼 조성사업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호수, 노후·불량주택 정비건수, 주차장 보급, 지역복지시설 조성건수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회복	사회적 경제프로그램 운영 건수, 공공공간 확여개선사업 및 조성건수, 일자리 창출(기타 운영)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지역공동체 발굴(신규)건수, 지역공동체 공간조성, 갈등관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목표지표 설정		주요 지표
일상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가로(보행)환경 조성, 도로개설 건수, 유희토지 활용건수, CCTV 및 보안등 설치, 주차장 보급, 빈집정비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회복	사회적 경제프로그램 운영 건수, 일자리 창출(기타 운영)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지역공동체 발굴(신규)건수, 갈등관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목표지표 설정		주요 지표
마을역사 장소매립 증진사업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주차장 보급, 생활문화공간 조성건수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회복	공공공간 확여개선사업 및 조성건수, 일자리 창출(기타 운영)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경관협정 체결 건수, 지역공동체 발굴(신규)건수, 갈등관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목표지표 설정		주요 지표
마을 커뮤니티 경제활성화 사업 & 거버넌스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지역복지향상 프로그램 운영건수, 지역복지향상 프로그램 연간 참여자수
	일자리 창출 및 도시활력회복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설립 건수/컨설팅 건수, 일자리 창출(활동가, 마을안내자, 현장지원센터)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모니터링 운영건수, 갈등관리 관련 프로그램 운영 건수
	거버넌스	주민협의체/도시재생추진협의회/도시재생행정협의회 회의 운영 횟수, 도시재생대학 운영 프로그램 발굴 건수, 도시재생대학 운영 횟수, 주민공모사업 운영 건수

⑧ 편입되는 토지 조서

가. 동광 공동체 조성(정정없음)

연번	읍면	리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1	하동읍	읍내리	392-5	278	기재부	
2	하동읍	읍내리	392-2	218	기재부	
3	하동읍	읍내리	393-1	142	교육청	
4	하동읍	읍내리	393-8	307	교육청	
5	하동읍	읍내리	392-3	19	사유지	
6	하동읍	읍내리	392-6	77	사유지	
7	하동읍	읍내리	392-7	90	사유지	
8	하동읍	읍내리	397-8	207	사유지	
9	하동읍	읍내리	395	1,217	군유지	
10	하동읍	읍내리	389-7	109	군유지	
11	하동읍	읍내리	392-4	115	군유지	
12	하동읍	읍내리	392-8	72	군유지	
13	하동읍	읍내리	392-9	11	군유지	
총계			13	2,862		

나. 동광 나눔채 조성

[기존]

연번	읍면	리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1	하동읍	읍내리	1227	99	사유지	
2	하동읍	읍내리	369	1,204	사유지	
3	하동읍	읍내리	401-1	107	사유지	
4	하동읍	읍내리	454	155	사유지	
5	하동읍	읍내리	1225-1	139	사유지	
6	하동읍	읍내리	463-4	486	사유지	
7	하동읍	읍내리	1187	195	사유지	
8	하동읍	읍내리	1226	102	사유지	
총계			8	2,487		

[정정]

연번	읍면	리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1	하동읍	읍내리	369	1,204	사유지	
2	하동읍	읍내리	401-17	173	사유지	
3	하동읍	읍내리	454	155	사유지	
총계			3	1,532		

[정정내용]

- 기존 고시공고 상 편입토지 조서 오기

다. 마을 숨길 띄우기(정정없음)

연번	읍면	리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1	하동읍	읍내리	450-5	350	사유지	
2	하동읍	읍내리	1189	164	사유지	
총계			2	514		

라. 동광마루 조성

[기존]

연번	읍면	리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1	하동읍	읍내리	1222-1	435	군유지	
2	하동읍	읍내리	1221	132	군유지	
3	하동읍	읍내리	1220	69	군유지	
4	하동읍	읍내리	382-3	469	교육청	
5	하동읍	읍내리	382-9	734	교육청	
6	하동읍	읍내리	394-1	129	교육청	
7	하동읍	읍내리	394-4	142	교육청	
8	하동읍	읍내리	382-2	324	교육청	
총계			8	2,434		



[정정]

연번	읍면	리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1	하동읍	읍내리	1222-1	435	군유지	
2	하동읍	읍내리	1221	132	군유지	
3	하동읍	읍내리	1220	69	군유지	
4	하동읍	읍내리	382-3	469	교육청	
5	하동읍	읍내리	394-1	129	교육청	
6	하동읍	읍내리	394-4	142	교육청	
7	하동읍	읍내리	382-2	324	교육청	
총계			7	1,700		

[정정내용]

- 기존 고시공고 상 편입 토지였던 하동읍 읍내리 382-9번지 오기

라. 우리마을 시인의 공간 아카이브센터 조성

[기존]

연번	읍면	리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1	하동읍	읍내리	1230-1	622	군유지	
2	하동읍	읍내리	469-1	642	군유지	
총계			2	1,264		

[정정]

연번	읍면	리	지번	면적(㎡)	소유자	비고
1	하동읍	읍내리	1230-1	622	군유지	
총계			1	622		

[정정내용]

- 기존 고시공고 상 편입 토지였던 하동읍 읍내리 469-1번지는 지목이 도로임에 따라 편입 토지에서 제외

9]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10. 기타사항

- 열람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 장소 : 하동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부서(하동군 군청로 23)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비치 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2 - 44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28.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점길 18-40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2.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사유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9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점길 18-40		20220228	20070618	동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767-8, 70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 282		20220228	20090302	들과 포구가 있던 지명으로 들포길로 명명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남산리 238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경서대로 963-28		20220228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60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법하길 24-12		20220228	20070618	화개골 전체가 수많은 사찰이 있는 불국토로 부처님의 법아래에 있다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433-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길 33		20220228	20070618	정동과 상신의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3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2. 25.

하 동 군 수

- 1. 허가(승인)번호 : 2022-13,14,15,16호
- 2. 허가연월일 : 2022. 2. 25.
- 3. 점·사용의 목적 :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하동군 옥종면 월항리 570	구	20,443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915-11	구	22,647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201-10	구	398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산72-1	구	3,274

- 5. 점·사용의 기간 : 2022.02.25. ~ 2022.06.30.
-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제2022-2호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가.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운영·관리 규정 중 이용제한, 협의회 설치, 지도감독내용 추가
  - 나. 타 조례에 포함된 하동군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중복된 내용 삭제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시설물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8조)
  - 다.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하동군(참조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활력담당 전화 055-880-6952, FAX 055-880-2749, e-mail y930106@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사업,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2.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에 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 마을회·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제5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지원)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수탁자에게 시

설물의 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유지보수비
2.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물의 수리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경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료 수입은 시설물 운영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이용 제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시설물의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4.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 및 시설물이 소재한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2.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비밀 준수)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관 련 법 규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4. 환경 보전 및 조성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행정·보존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공고 제2022-3호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3 월 3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농촌협약, 시군역량강화사업)에 전제되고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지원의 근거 마련
3.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기본원칙(안 제1조~제3조)
  - 나.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 다.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4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3월 23 일까지 하동군(참조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활력담당 전화 055-880-6952, FAX 055-880-2749, e-mail y930106@korea.kr)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8.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제외 최소 5인 이상)를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농촌협약 위원회”란 군 및 도 전담조직, 민간전문가(PM단),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하동군의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제7조(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3. 마을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9조(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 제3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

제12조(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되 그 기능과 역할은 협약 당사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4장 읍·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읍·면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문·심의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자문



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발전협의회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하며, 부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장 및 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추진(운영)위원장
  3. 마을만들기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④ 발전협의회에 필요시에는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추진(운영)위원장은 여러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9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여성 리더쉽 교육, 양성평등의식 함양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포함)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 4.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군역량강화사업
-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21조(센터의 구성) ① 군수는 중간조직으로 센터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22조(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규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도 및 광역협력권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육성,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산물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에 관한 지원
2. 특산물등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지원
3. 특산물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포장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지원
4. 특산물등의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자금 지원
5. 특산물등의 생산기술의 전수·계승 및 이와 관련된 인력육성의 지원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등 기업집적화 및 농어촌산업 인프라 조성 지원
- 7. 농어촌산업 창업 및 역량강화 지원
- 8. 그 밖에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 1. 주거환경의 개선
-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문화·복지 기능이 확충된 적정규모의 농어촌 거점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 1. 적절한 토지이용 및 주요기반시설 조성
- 2. 적정 인구 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
- 3. 교통·산업·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
- 4. 환경 보전 및 조성
- 5. 그 밖에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소하천의 점용 · 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22-289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 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5일

###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대표자 (성명)		주소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산림환경연구원 (전화번호 : 055-254-3924)
소하천명		문암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498-13구		
	면적	2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영구		
	목적 및 사유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2022-295호

#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사 업 명 : 천연잔디구장 관리용 장비 구입
- 나. 구입내역 :

기 종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계					159,654,000
승용식 3갱모어	24.8HP이상	대	1	94,754,000	94,754,000
승용식 시약차	24.8HP이상	대	1	64,900,000	64,900,000

- 다. 기초금액 : 금 159,654,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마. 납품장소 : 하동군 (현장설치도)

##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2. 02. 18.(금) 10:00 ~ 2022. 02. 22.(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 02. 22.(화)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다소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4.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 5. 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지방서 납품 가능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와 자격이 있는 업체

- ①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에 의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 소형(7270) 또는 중형(7269) 또는 대형(7268) 등록을 필한 업체
- ②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세부품명번호 2110159801, 2110170101)
- ③제조사가 아니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 「납품 및 사후 A/S확약서」를 적격심사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 이용 확인)

\*. **반드시 지방서 속지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관련 참고사항》

-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5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참가자가 2개씩 추천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낙찰자 결정방법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의합니다.[고시금액미만인 세부기준 적용 **예정가격 이하 84.245%입니다.**

다.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같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 재정관리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물품구매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계약 및 착공** :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전자계약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 가. 본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 라.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군 재정관리과(☎055-880-2284)로, 물품에 관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과(055-880-2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센터 하동군 기획예산과 055-880-20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2. 16.

**하동군 재무관**



###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 2022-325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2일

###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강영선	주소	적량면 동촌길 64
소하천명		상증삼천		
공사(점용· 사용) 개요	위치	하동군 적량면 동리 1435번지(구거)		
	면적	15㎡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22.02.21. ~ 2026.02.20.		
	목적 및 사유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하동군 공고 제2022 - 356호

#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8.

## 하 동 군 수

- 1. 등록 및 폐기일 : 2022. 2. 28.
- 2. 등록 및 폐기사유 : 인증기 교체
- 3. 등록 및 폐기공인

구분	공 인 명	글씨체 및 규격	인영	비고
등록	민원사무전용 청암면장인 (인증기)	한글전서체 2.1cm 정사각형		
폐기	민원사무전용 청암면장인 (인증기)	한글전서체 2.1cm 정사각형		